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6일,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0회 국회(임사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사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3.19.) 상정, 축조심사, 의결
(수정가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선교 의원)

현행 「항만법」 제41조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무단으로 항만시설 내 선박을 방치하는 자에 대한 실질적 처분 근거가 부재함. 따라서 현재 무역항 내의 장기 미운항 선박 등이 항만 질서 및 안전, 환경상 위험을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해당 선박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처분 근거가 부재함.

한편 「국유재산법」 제74조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시 행정대집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공유수면 및 항만시설 역시 국유재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필요함. 이에 모든 국민들이 항만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무역항 내 선박사고로 인한 해양환경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방치하는 자에 대해 관리청이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성완)

개정안은 대부분의 장기 미운항 선박이 ‘계선신고’ 뿐만 아니라 「항만법」 상 ‘항만시설 사용허가’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용허가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및 행

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개정안은 현행법 제4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해 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의 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 및 목적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안 제83조제3항의 ‘이해하지’를 ‘이행하지’로 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부대의견

없음

10. 소수의견 요지

없음

11.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

1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향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향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안은 현행법 제4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해 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의 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과 문맥을 고려하여 자구를 수정함(안 제83조제3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3조제3항 중 “이해하지”를 “이행하지”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illegible]

	<u>단을 위반하여</u>	
	<u>항만시설을 사용</u>	
	<u>한 경우</u>	
<u>6.</u> (생략)	<u>6의2.</u> (현행 제6호	6의2. (개정안과 같
	와 같음)	음)
7.·8. (생략)	7.·8. (현행과 같음)	7.·8. (개정안과 같
		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③ <u>해양수산부장관</u>	③ -----
	<u>또는 시·도지사는</u>	-----
	<u>제1항제6호를 위반</u>	-----
	<u>하여 이전·제거</u>	-----
	<u>또는 원상회복의</u>	-----
	<u>명령을 받은 자가</u>	-----
	<u>그 명령을 이해하</u>	----- <u>이행하지</u> -----
	<u>지 아니하는 경우</u>	-----
	<u>에는 「행정대집행</u>	-----
	<u>법」에 따라 대집</u>	-----
	<u>행을 할 수 있다.</u>	-----.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④ (개정안과 같음)
	같음)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6호를 제6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③ (생 략)	<u>여 이 전 · 제 거 또는 원 상 회 복</u> <u>의 명 령 을 받 은 자 가 그 명 령</u> <u>을 이 행 하 지 아 니 하 는 경 우 에</u> <u>는 「 행 정 대 집 행 법 」 에 따 라</u> <u>대 집 행 을 할 수 있 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